

검안 보고서와 부검감정서의 사인 및 사망의 종류 비교 연구

나주영¹ · 김형건¹ · 김은정²
이성진² · 이봉우²

¹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²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센터

Received: November 15, 2016

Revised: November 21, 2016

Accepted: November 24, 2016

The study was presented at the 40th Autumn Congress of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November 25, 2016; Daegu, Korea.

Correspondence to

Joo-Young Na
Forensic Medicine Division, National Forensic Service Gwangju Institute, 687 Chungnyeong-ro, Seosam-myeon, Jangseong 57231, Korea
Tel: +82-61-393-8442
Fax: +82-61-393-8440
E-mail: pdrdream@gmail.com

Discrepancies in the Cause and Manner of Death Reported in Postmortem Inspection and Autopsy

Joo-Young Na¹, Hyeong-Geon Kim¹, Eun-Jeong Kim², Seong-Jin Lee²,

Bong-Woo Lee²

¹Forensic Medicine Division, National Forensic Service Gwangju Institute, Gwangju, Korea,

²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Jangseong, Korea

Currently in the Republic of Korea, most postmortem investigations occur within the context of a death scene investigation and are restricted to a postmortem inspection without a subsequent autops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results of postmortem inspection and autopsy to investigate the limits of postmortem inspection. The conclusions about the cause and manner of death stated in the two reports were compared. A retrospective study was carried out on 6,126 autopsy cases perform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5. Of these autopsy cases, 2,263 included postmortem inspection reports. The stated cause and manner of death conflicted with the autopsy report in 55.1% and 32.9% of the postmortem inspection reports, respectively. Among these conflicted reports, the cause and manner of death was undetermined in 66.6% and 70.3% of the postmortem inspection reports, respectively. Furthermore, different types of discrepancies were found between the causes and manner of death that were stated in the reports by police investigators and those by forensic pathologists. This study revealed that postmortem inspection is not sufficient in the postmortem investigation and forensic autopsies need to be performed.

Key Words: Autopsy; Comparative study; Cause of death; Republic of Korea

서 론

검시(postmortem investigation)는 죽음에 대한 조사이고,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수사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검시(postmortem examination)는 변사체 등 시신에 대해 의학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검안(postmortem inspection)과 부검(autopsy)으로 구분된

다. 검안은 유족 및 변사체의 발견자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문진을 포함하여 시신에 대해 시진, 촉진 등 비침습적 방법을 통해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이다. 반면에 부검은 해부를 포함하여 침습적인 검사까지 시행하여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검은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사인 (cause of death)과 사망의 종류(manner of death)를 판단하는 등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가장 좋은 검사 방법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죽음을 대

상으로 부검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변사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6.0% 정도에 불과하여 변사 사건에서 대부분은 검안만으로 검시(postmortem examination)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 경찰청에서는 2005년부터 변사 건에서 변사체에 대한 검시(postmortem examination)의 질적 향성을 위해 주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출신의 검시조사관을 채용하여 검시를 전담하고, 검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변사체에 대한 검시(postmortem examination)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검시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검시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검시보고서를 분석하여 검시보고서상의 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법의부검 후 확정된 그것과 비교하였다. 또한, 법의학을 전공한 법의병리 의사의 검안에 의한 검안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15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접수되어 시행된 법의부검 중 부검의뢰서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6,126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 부검 당시 검안 자료가 제출되어 법의부검 자료에서 경찰 검시조사관에 의한 검시보고서 및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례는 2,263건이었다. 이를 자료를 분석하여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 작성된 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부검감정서상

의 사인과 사망의 종류와 비교, 분석하였다. 사인이 불일치한 경우는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 불명으로 작성된 경우와 특정 사인을 기술하였으나 불일치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사인의 일치 판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본으로 사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부검 후에 확정된 사인과 일치하거나 추정 할 수 있는 정도일 때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검안 후 보고서에서 외상성 두개강내출혈이 사인으로 작성되었고, 부검 후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인이 판정된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부검 후 급성심장사로 판단되었으나, 검안 후 보고서에는 단지 내인성 급사로 기재된 경우는 불일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인과 사망의 종류 일치 판단에 있어서는 저자 두 명 이상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였다. 사망의 종류는 내인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하였다. 사망의 종류가 불일치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사망의 종류 불일치 제1형은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 내인사로 작성되었으나, 법의부검 후 외인사로 판정된 것으로 하였다. 제2형은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서 외인사로 작성되었으나, 법의부검 후 내인사 혹은 외인사로 판정된 것으로 하였다. 제3형은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서 기타 및 불상으로 작성되었으나, 법의부검 후 내인사 혹은 외인사로 판정된 것으로 하였다. 제3형은 다시 부검감정서 상에서 내인사이었던 증례는 제3-1형, 외인사이었던 증례는 제3-2형으로 세분하였다. 제4형은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서 내인사 또는 외인사로 작성되었으나, 법의부검 후 불명으로 판정된 것으로 하였다. 제4형 역시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

Table 1. Autopsy report and postmortem inspection report data

Region	Autopsy	Postmortem inspection report ^{a)}	Submitted ratio (%)
Seoul	1,115	756 (561)	67.8
Busan	315	174 (173)	55.2
Incheon	420	137	32.6
Daegu	184	87 (72)	47.3
Gwangju	143	116	81.1
Daejeon	139	57	41.0
Gyeonggi-do	1,664	399 (8)	24.0
Gangwon-do	304	81	26.6
Chungcheongbuk-do	242	70	28.9
Chungchennam-do	346	17	4.9
Jeollabuk-do	222	118	53.2
Jeollanam-do	355	221	62.3
Gyeongsangbuk-do	326	7	2.1
Gyeongsangnam-do	351	23 (16)	6.6
Total	6,126	2,263	36.9

Data of Ulsan and Jeju were not collected.

^{a)}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forensic pathologist report.

내인사로 작성되었던 증례는 제4-1형, 외인사로 작성되었던 증례는 제4-2형으로 세분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검토한 자료는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6,610건의 법의부검 중에서 부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6,126건의 법의부검 증례로 하였다. 이 중에서 부검 당시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가 제출되어 이들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증례는 2,263건(36.9%)이었다.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가 제출된 경우는 법의부검이 시행된 지역에 따라 달랐다. 해당 지역의 해양경비안전서를 포함하여 검안 후 보고서가 많이 접수된 곳은 광주광역시(81.1%), 서울특별시(67.8%), 전라남도(62.3%), 부산광역시(55.2%), 전라북도(53.2%), 대구광역시(47.3%), 대전광역시(41.0%)였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이하였다.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는 법의병리 의사가 검안을 시행하는 곳으로 제출된 검안 자료의 상당 부분은 법의병리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검안서였다(Table 1).

전체적으로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와 부검감정서에서 사인이 일치한 건은 전체 2,263건에서 1,017건으로 44.9%이었다. 불일치하였던 1,246건(55.1%)에서 사인이 불명으로 작성된 경우는 830건(66.6%)이었고, 특정 사인이 기록되었으나, 부검 후 확정된 사인과 불일치 하였던 경우는 416건(33.4%)이었다. 한편, 일치하였던 1,017건에서 내인사는 69건(6.8%)에

불과하였고, 외인사가 756건(74.3%), 불명이 192건(18.9%)이었다. 반면에 사인이 불일치하였던 1,246건에서는 내인사 860건(69.0%), 외인사 288건(23.1%), 불명 98건(7.9%)이었다(Table 2).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와 부검감정서상에서 사망의 종류가 일치한 건은 전체 2,263건에서 1,518건으로 67.1%이었고, 불일치하였던 건은 745건으로 불일치율은 32.9%이었다.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는 내인사로 작성되었으나, 부검 후에 외인사로 확정되었던 제1형의 불일치 건은 72건(9.7%)이었다. 72건의 제1형 불일치에서는 중독사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상사 18건, 질식사 6건, 익사 5건, 온도이상에 의한 사망 3건, 감전사 2건,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1건이었다.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는 외인사로 작성되었으나, 부검 후에는 내인사로 확정되었던 제2형의 불일치 건은 47건(6.3%)이었다.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작성되었으나, 부검 후에 내인사로 확정되었던 제3-1형의 불일치 건은 364건(48.9%)이었고,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작성되었으나, 부검 후에 외인사로 확정되었던 제3-2형의 불일치 건은 160건(21.5%)이었다.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는 내인사로 작성되었으나, 부검 후 불명으로 확정되었던 제4-1형의 불일치 건은 57건(7.7%)이었고,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는 외인사로 작성되었으나, 부검 후 불명으로 확정되었던 제4-2형의 불일치 건은 45건(6.0%)이었다(Table 3).

경찰 검시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검시보고서와 법의병리 의사

Table 2. A classification of accordant and discordant CODs according to MOD

	Natural	Unnatural	Unknown	Total
Accordant COD	69 (6.8)	756 (74.3)	192 (18.9)	1,017
Discordant COD	860 (69.0)	288 (23.1)	98 (7.9)	1,24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OD, cause of death; MOD, manner of death.

Table 3. Discrepancies between postmortem inspection and autopsy reports concerning MOD

Type	MOD on the postmortem inspection reports	MOD on the autopsy reports	Death scene investigator report (%)	Forensic pathologist report (%)	No. (%)
1	Natural	Unnatural	59 (13.4)	13 (4.3)	72 (9.7)
2	Unnatural	Natural	34 (7.7)	13 (4.3)	47 (6.3)
3-1	Unknown	Natural	178 (40.5)	185 (60.7)	363 (48.7)
3-2	Unknown	Unnatural	106 (24.1)	55 (18.0)	161 (21.6)
4-1	Natural	Unknown	32 (7.3)	25 (8.2)	57 (7.7)
4-2	Unnatural	Unknown	31 (7.0)	14 (4.6)	45 (6.0)
Total			440 (100)	305 (100)	745 (100)

MOD, manner of death.

에 의해 작성된 검안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2,263 건에서 경찰 검시조사관에 의한 검시보고서는 1,433건이었고, 법의병리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검안서는 830건이었다. 경찰 검시조사관에 의한 검시보고서에서 사인이 불일치한 경우는 809건으로 56.5%였다. 이 중 사인이 불명으로 작성된 경우는 537건(66.4%)이었다.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에서 사인이 불일치한 경우는 437건으로 52.7%였다. 이 중 사인이 불명으로 작성된 경우는 293건(67.0%)이었다.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에서 112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에 의한 검안서였다. 사인이 불일치한 경우는 74건으로 66.1%였고, 이 중에서 불명으로 작성된 경우가 67건으로 90.1%였다.

검시조사관에 의한 검시보고서에서 사망의 종류가 불일치한 경우는 전체 1,443건 중에서 440건(30.5%)이었다. 이 중에서 제1형은 59건(13.4%), 제2형은 34건(7.7%), 제3-1형은 178건(40.5%), 제3-2형은 106건(24.1%), 제4-1형은 32건(7.3%), 제4-2형은 31건(7.0%)이었다.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에서 사망의 종류가 불일치한 경우는 전체 830건에서 305건(36.7%)이었다. 이 중에서 제1형은 13건(4.3%), 제2형은 13건(4.3%), 제3-1형은 185건(60.7%), 제3-2형은 55건(18.0%), 제4-1형은 25건(8.2%), 제4-2형은 14건(4.6%)이었다(Table 3).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 830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법의관이 작성한 검안서가 112건이 존재하였다. 112건에서는 사망의 종류가 불일치한 경우는 68건으로 60.7%였으며, 제1형과 제4형의 불일치는 없었고, 제2형의 불일치가 1건 있었으며, 나머지 67건은 모두 제3형의 불일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 검토하였던 전체 법의부검 자료는 모두 6,126건이었고, 이 중에서 검안 후 보고서가 제출되었던 증례는 2,263건으로 36.9%에 불과하였다. 검시(postmortem examination)의 주요 최종 절차인 법의부검에서 검안 후 보고서가 제출되는 정도가 이와 같이 적은 이유로는 다음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법의부검이 이루어질 변사 사건이었으나, 검시조사관 등에 의한 변사체 검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변사체의 검안이 이루어졌으나, 법의부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검안 후 보고서가 작성되지 못했을 경우이다. 셋째, 변사체의 검안도 이루어졌고, 검안 후 보고서의 작성도 이루어졌으나, 변사 사건의 수사 담당자가 법의부검 당시에 변사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검안 후 보고서를 누락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변사 사건의 검시(postmortem examination)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검시조사관에 의한 검안

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은 합리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수정되어야 할 부적절한 이유들로 생각된다. 한편, 검안 후 보고서가 제출되는 정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정한 원칙이 없이 변사 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법의부검 시 제출되는 자료의 목록화 등 변사 사건의 처리에 대한 일정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 일부, 부산 및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들 지역에서 제출된 검안 후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였다. 따라서 법의병리 의사에 의해 검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변사체에 대한 검안 업무가 법의병리 의사에게 상당 부분 의존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변사체의 검안에 의한 결과인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서 작성된 사인이 법의부검 후 확정된 사인과 불일치하는 경우는 전체 2,263건에서 55.1%인 1,246건이었다. 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에서의 사인을 법의부검 후 확정된 사인과 비교한 이전 연구에서 사인이 불일치했던 경우는 58.9%로 보고되었다[2]. 따라서 검안에 의해 사인을 추정하는 경우, 일반 의사에 의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와 검시조사관에 의한 검시보고서,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50% 이상에서 사인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불일치하였던 1,246건에서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 사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불명으로 작성한 경우는 830건으로 66.6%에 해당되었다. 즉, 사인이 불일치한 경우에 변사체를 검안하고 사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경우는 약 1/3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검안만으로 변사체의 사인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인이 일치하였던 경우의 74.3%는 외인사 증례였고, 내인사의 경우는 69건으로 사인이 일치하였던 1,017건에서 6.8%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사인이 불일치하였던 경우의 69.0%는 내인사이었고, 외인사의 경우는 288건으로 사인이 불일치하였던 1,246건에서 23.1%였다. 따라서 검안을 통해 사인이 일치하였던 경우의 3/4가 외인사 증례였고, 내인사 증례에서 검안을 통해 사인이 일치하는 경우는 7.4%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경찰 검시조사관과 법의병리 의사가 작성한 검시보고서와 검안서 사이에서 사인에 대한 불일치 정도를 각각 분석하였다. 경찰 검시조사관에 의한 검시보고서는 1,433건이었고,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는 830건이었다. 경찰 검시조사관에 의한 검시보고서에서 사인이 불일치한 경우는 809건으로 56.5%였고,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에서 사인이 불일치한 경우는 437건으로 52.7%였다. 따라서 법의병리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검안서에서 사인이 일치하는 경우가

조금 높았으나, 검시보고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인이 불일치한 경우에서 사인을 불명으로 작성한 경우가 경찰 검시조사관은 537건으로 66.4%였고, 법의병리 의사는 293건으로 67.0%였다. 따라서 검안 후 사인을 판정함에 있어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법의관에 의한 검안서의 경우 사인이 불일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들 대부분은 불명으로 작성된 경우였다.

사망의 종류에 있어서는 전체 2,263건에서 불일치한 경우가 745건으로 32.9%였다. 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에서의 사망의 종류를 법의부검 후 작성된 사망의 종류와 비교한 이전 연구에서 사망의 종류가 불일치했던 경우는 52.7%로 보고되었다[2]. 따라서 사망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에서보다 경찰 검시조사관과 법의병리 의사가 작성한 검시보고서와 검안서에서 사망의 종류에 대한 일치율이 높았으나, 여전히 1/3 가량은 불일치하였다.

사망의 종류 불일치를 세분하여 분석하여 보면 제1형의 불일치 건은 72건으로 사망의 종류가 불일치하였던 전체 745건에서 9.7%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사망의 종류가 내인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되는 것으로써 변사 사건의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중에서 중독사가 37건으로 51.4%를 차지하였다. 이는 검안만으로 중독사를 진단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기준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3]. 다음으로는 손상사가 18건으로 25%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에서 머리부위 손상이 13건이었다. 따라서 검안을 시행함에 있어 머리부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는 외인사로 작성되었으나, 법의부검 후 내인사로 확정된 제2형의 불일치 건은 47건으로 6.3%였다. 다음으로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작성되었으나, 법의부검 후에 내인사로 확정되었던 제3-1형의 불일치 건은 363건(48.7%)이었고,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작성되었으나, 부검 후에 외인사로 확정되었던 제3-2형의 불일치 건은 161건(21.6%)이었다. 이와 같이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서 기타 및 불상으로 작성되었던 증례는 불일치하였던 전체 745건에서 70.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사인뿐만 아니라 사망의 종류에서도 검안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법의부검 후 내인사로 확정되었던 제3-1형의 불일치가 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인사로 확정되었던 제3-2형의 불일치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는 내인사로 작성되었으나, 부검 후 불명으로 확정되었던 제4-1형의 불일치 건은 57건(7.7%)이었고,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는 외인사로 작성되었으나, 부검 후 불명으로 확정되었던

제4-2형의 불일치 건은 45건(6.0%)이었다. 이들은 검안에 의한 과잉 진단(overdiagnosis)이 우려되는 증례들이었다.

사망의 종류 불일치 역시 경찰 검시조사관에 의한 검시보고서와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1,443건의 검시보고서와 830건의 검안서에서 사망의 종류가 불일치한 경우는 각각 440건과 305건으로 30.5%와 36.7%였다. 전체적으로는 법의병리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검안서에서 사망의 종류의 불일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검시보고서에서 사망의 종류 불일치 사례와 검안서에서 사망의 종류 불일치 사례에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내인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되었던 제1형의 불일치 72건에서 검시보고서의 불일치가 59건이었고, 검안서의 경우 13건이었다. 이는 전체 검시보고서 불일치 440건의 13.4%였고, 전체 검안서 불일치 305건의 4.3%였다. 따라서 변사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외인사가 간과될 수 있는 제1형의 불일치 증례는 검시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비록 증례 수는 적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법의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 중 9.4%에서 내인사가 외인사로 수정되었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었다[4]. 또한, 외인사에서 내인사로 수정되었던 제2형의 불일치 47건에서는 검시보고서의 불일치가 34건이었고, 검안서의 불일치가 13건이었다. 이는 전체 검시보고서 불일치 440건에서 7.7%였고, 전체 검안서 불일치 305건에서 4.3%였다. 따라서 변사사건의 수사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제1형과 제2형의 적극적인 불일치는 상대적으로 검시보고서에서 많았다.

한편 기타 및 불상이었던 제3형의 불일치에서는 검시보고서의 경우 284건으로 전체 검시보고서 불일치 440건에서 64.5%였고, 검안서의 경우 240건으로 전체 검안서 불일치 305건에서 78.7%였다. 마지막으로 법의부검 후 불명으로 확정되었던 제4형의 불일치의 경우 검시보고서는 63건으로 전체 검시보고서 불일치 440건 중에서 14.3%였고, 검안서는 39건으로 전체 검안서 불일치 305건에서 12.8%이었다. 따라서 사망의 종류가 불일치한 경우에서 검안서가 불일치 경우는 대부분이 기타 및 불상으로 작성되는 제3형의 불일치였고, 특히 법의부검 후 내인사로 확정되었던 제3-1형의 불일치가 185건 60.7%로 매우 많았다. 그리고 과잉 진단이 우려되었던 제4형의 불일치는 검시보고서와 검안서에서 비율이 비슷하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에 의해 작성된 검안서의 경우 불일치율이 높았고, 불일치한 경우의 거의 대부분(98.5%)이 제3형의 불일치로 제1형과 제4형의 불일치는 없었다.

이상의 결론 및 고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법의부검 당시 검안 후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36.9%에 불과하였고, 검안 후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

우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법의부검 시 제출 서류의 목록화 등 변사 사건의 수사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경찰 검시조사관 및 법의 병리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검시보고서와 검안서에서 사인은 절반 이상 불일치하였고, 불일치한 경우에서 사인을 불명으로 작성된 경우가 약 2/3을 차지하여 검안을 통해 사인을 판정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내인사에서 검안 만으로 사인을 판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검안 당시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인 및 사망의 종류를 불명으로 판정함으로써 부검 등 추가적인 검시(postmortem examination)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검시(postmortem investigation) 절차일 것으로 생각된다.셋째, 검시보고서 및 검안서에서 사망의 종류는 약 1/3에서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이 중에서 약 70%정도는 기타 및 불상으로 작성되었던 제3형의 불일치 증례였고, 이들은 검안의 한계를 고려할 때 소극적인 불일치 증례들로 판단할 수 있었으나, 불일치하였던 증례 중 약 10%는 내인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되는 증례들이었던바, 검안만으로 사망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검안의 본질적 한계를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검안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추가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경찰 검시조사관에 의한 검시보고서와 법의 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에서 사망의 종류 불일치는 검안서에서 많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법의 병리 의사에 의한 검안서의 경우 기타 및 불상인 제3형의 불일치가 대부분이었고, 내인사가 외인사로 수정되거나 외인사가 내인사로 수정되었던 증례들은 상대적으로 검시보고서에서 더욱 많았다. 따라서 작성 기관에 따라 불일치 경향의 차이가 확인되었고, 사인 및 사망의 종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불명, 기타 및 불상으로 판단하여 부검 등 추가적인 검시(postmortem

examination)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증례에서는 부검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 검안에 있어 중독사, 머리부위 손상사, 질식사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최소한의 침습을 통한 사후검사, 사후 영상의학적 검사 등 검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연구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2016MED05), Ministry of Interior, Republic of Korea.

References

1. Jang JS, Jang SJ, Choi BH, et al. A statistical analysis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in 2014. *Korean J Leg Med* 2015;39:99-108.
2. Kim HG, Park JW, Cho WY, et al. The discrepancy of the cause and manner of death between death certificates and autopsy reports. *Korean J Leg Med* 2014;38:139-44.
3. Yang KM, Lee BW, Park JW, et al. The predictive ratios of intoxicated deaths by police's death scene investigation and doctor's death certificates in South Korea. *Korean J Leg Med* 2016;40:65-71.
4. Huh GY, Kim KH, Jo GR, et al. Differences in the determination of cause and manner of 127 natural death cases by postmortem inspection and autopsy. *Korean J Leg Med* 2013;37:9-13.